

의안  
번호

464

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행정기획위원회

#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2025. 04. 18.

전문위원 김 동 성

### 1. 제안경위

가. 제출자 : 김 경 이 의원 외 18명

나. 의안번호 : 제464호

다. 제출일자 : 2025. 03. 28.

라. 회부일자 : 2025. 04. 10.

### 2. 제안이유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·시행에 따라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(제13조의2, 2023. 9. 14. 시행)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(제33조의3, 2024. 3. 26. 시행)을 조례에 반영하여 성북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, 지원시책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생활체육, 체육동호인조직, 스포츠클럽, 생활체육교실에 대해 정의함(안 제2조)
- 나.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4조)
- 다.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(안 제5조)
- 라. 체육동호인조직, 스포츠클럽,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6조)
- 마. 성북구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함(안 제7조)
- 바. 우수선수 육성지원, 구립체육단 운영 및 경비지원에 대해 규정함(안 제9조 ~ 안 제11조)
- 사.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(안 제13조)
- 아.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해 규정함(안 제14조 ~ 안 제17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  
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- 다. 입법예고
  - 기 간 : 2025. 04. 03. ~ 2025. 04. 08.
  - 의 견 : 의견 없음.

## 5. 검토의견

### □ 개요

- 본 전부개정안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체육행사의 안전 조치 의무화 규정과 성북구체육회에 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수의계약 위탁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성북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 내용

- 안 제2조(정의)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생활체육, 체육동호인조직에 대한 용어를 상위법을 인용하여 정의하였고, 각종 생활체육 종목을 습득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“생활체육교실”로 명확하게 정의함.
- 안 제13조(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)는 같은 법 제13조의2)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체육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·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사료 되며,
- 안 제14조(공유재산의 대부 등)부터 제17조(대부·사용허가)까지는 같은 법 제33조의3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

1)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3조의2(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·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,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·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[본조신설 2023. 9. 14.]

2)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3(공유재산의 대부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

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·위탁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, 성북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됨.

- 그 밖에 근거 법령인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 등을 명확히 하고, 안 제13조부터 안 제17조의 신설에 따른 조 변경 및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 됨.

## □ 종합의견

-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3조의2(법률 제19701호, 공포 2023.9.14., 2024.3.15. 시행)개정으로 1천명 이상<sup>3)</sup> 밀집하는 체육행사에 대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, 같은 법 제33조의3(공유재산의 대부 등)의 개정<sup>3)</sup>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위탁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됨이 없고 타당한 조치로 사료 됨.

---

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3) 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」 제11조의9(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)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”이란 1천명 이상의 인원을 말한다.